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유은혜 (교육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저소득층 학생 등에 대한 학자금 지원 관련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670호, 2020.12.22. 공포, 2021.6.23. 시행)됨에 따라 학자금 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대상과 정보 제공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우선적 학자금 지원 대상 추가(안 제33조의4제1항)

- 법 제49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선적 학자금 지원 대상에 ‘출산 또는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모든 자녀’를 추가함에 따라 시행령에 반영함

나. 학자금 지원 정보 제공 대상 및 내용 구체화(안 제33조의4제5항 및 제6항 신설)

- 학자금 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대상은 대학생과 고등학생 중 제21조2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체화하고, 학자금 지원 정보를 제공할 때는 지원 대상,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을 포함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합의 예정('21.3월)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진행예정('21.3.10.~4.19.)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사전협의 완료('21. 3. 3.)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4제1항 중 “법 제49조의4”를 “법 제49조의4제1항”으로, “수급자”를
“수급자,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모든
자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49조의4제2항에 따라 재단이 학자금 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대상은
제21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대학생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의 학교에 재학하는 사람을 말한다.

⑥ 법 제49조의4제3항에 따라 제5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학자금 지원
정보를 제공할 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학자금 지원의 종류 및 대상
2. 학자금 지원의 범위, 신청 방법 및 절차
3. 그 밖에 학자금 지원 정보 제공을 위해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3조의4(우선적 학자금 지원)	제33조의4(우선적 학자금 지원)
① 법 제49조의4에서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u>수급자</u>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대학생”이란 재단이 대학생 가구의 소득금액(소득과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대학생의 학업성적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법 제49조의4제1항----- ----- ----- ----- <u>수급자,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 하는 가정의 모든 자녀</u> ----- ----- ----- ----- -----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⑤ 법 제49조의4제2항에 따라 재단이 학자금 지원 정보를 제공 하는 대상은 제21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대학생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의 학교에 재학하는 사람을 말한다.
<u><신 설></u>	⑥ 법 제49조의4제3항에 따라 제5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학자금 지원 정보를 제공할 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u>1. 학자금 지원의 종류 및 대상</u> <u>2. 학자금 지원의 범위, 신청 방법 및 절차</u> <u>3. 그 밖에 학자금 지원 정보 제공을 위해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	
연 락 처	(044) 203 - 6290 (044) 203 - 6227